

교무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무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무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편제 또는 학과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2.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장·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4. 대학운영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5. 삭제(2012.10.1.)
6.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이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(교학부총장, 대외협력부총장), 대학원장, 부원장, 대학장, 처장, 연구산학협력단장, 중앙도서관장, 교육혁신원장, 대학일자리본부장, 대학일자리센터장, 창업지원단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 1998.9.1., 2007.8.24., 2008.11.1., 2011.9.1., 2013.3.1., 2017.5.17., 2018.4.1., 2018.4.20., 2018.8.16., 2019.8.21., 2020.2.1.)

②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. (개정 1998.9.1.)

③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(신설 2017.12.15)

제4조 (위원장 등)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(개정 2007.8.24)

②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서기) 서기는 평가기획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08.3.1, 2011.9.1)

제6조 (회의)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회의록 작성)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05.17.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>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12.15.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>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(명칭변경)에 따른 일괄 개정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04.20.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08.16. 2018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08.21.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(명칭변경)에 따른 일괄 개정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